| 투자 위험 등급<br>4등급 [보통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유진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 유진자산운용㈜ |
| 3. 판 매 회 사 | : | 각 판매회사 본・지점<br>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 | 2024년 04월 00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 | 2024년 5월 12일(예정)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br>[모집(매출) 총액 : 제한없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 | 2024년 05월 16일 ~ 2024년 05월 31일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br>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br>나. 투자설명서<br>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br>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

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목표전환형 투자신탁으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한 날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현수익률은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 작성기준일 : 2024.04.00 |
|---|---|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00000]**

|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유진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운용전환일 이후 :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원본손실위험, 이자율변동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위험,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br>- 이 투자신탁은 삼성전자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하로 투자하고, 주가 흐름에 따른 동적자산배분을 통해 주가 하락 시 매수 및 주가 상승 시 매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을 쌓는 구조로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br>- 공모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br>- 목표기준가격 1,080원(A클래스 기준)에 도달한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채권관련 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br>**※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단위형, 개방형, 종류형 |

**투자비용**

| 클래스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 | |
|---|---|---|---|---|---|---|---|---|
| | 판매수수료 | 기간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1년 | 2년 |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50%이내 | 운용전환일 이전 | 0.70 | 0.20 | 0.71 | 120 | 190 | 262 |
| | | 운용전환일 이후 | 0.435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없음 | 운용전환일 이전 | 1.10 | 0.60 | 1.05 | 111 | 222 | 335 |
| | | 운용전환일 이후 | 0.835 |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25%이내 | 운용전환일 이전 | 0.60 | 0.10 | 0.43 | 85 | 146 | 208 |
| | | 운용전환일 이후 | 0.335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없음 | 운용전환일 이전 | 0.80 | 0.30 | 0.59 | 81 | 162 | 244 |
| | | 운용전환일 이후 | 0.535 | | | |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투자수익률은 아래 각각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가정하여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운용전환일까지 투자수익률 : 8.0%

②운용전환일 이후 투자수익률 : 2.0%

③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 6.0%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기간(최대 3년)동안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을 경우,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 |

주1)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규모(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하석근 | 1975 | 책임 운용전 문인력 | 2 | 266 | - | - | - | - | 4.8년 |
| 홍현기 | 1994 | 부책임 운용전 문인력 | 3 | 352 | - | - | - | - | 1.1년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투자자<br>유의사항</td><td>-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br>-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이 투자신탁은 목표전환형 투자신탁으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한 날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현수익률은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주요<br>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ETF 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총액)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집중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특정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경우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종목별 투자한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업종 및 종목면에서 제한된 수익 대상에 투자하게 되어 위험분산효과가 낮습니다.</td></tr>
<tr><td>계량모델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모델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의 수치를 사용하므로 계량모델에 따른 전략을 수행할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계량모델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시장 상황과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 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td></tr>
<tr><td>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한 날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현수익률은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채권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4">
<table>
<tr><td>펀드만기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매입<br>방법</td><td>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td><td rowspan="2">환매<br>방법</td><td rowspan="2">17시 이전 환매청구 시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D+2)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br><br>17시 경과 후 환매청구 시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D+3) 기준가격으로 5영업일(D+4)에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br>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4">
<table>
<tr><td>산정방법</td><td>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br>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colspan="4">
<table>
<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br>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br>업자</td><td colspan="4">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29-3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und.eugenefn.com<br>[업무위탁] (주)예드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 등</td></tr>
<tr><td>모집기간</td><td>2024년 05월 16일<br>~ 2024년 05월 31일</td><td>모집・매출<br>총액</td><td colspan="2">제한없음</td></tr>
<tr><td>효력<br>발생일</td><td>2024년 05월 12일</td><td>존속 기간</td><td colspan="2">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br>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br>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함</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및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기관(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및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und.eugenef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und.eugenef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 fund.eugenefn.com)

#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0
3. 모집예정금액 ..... 10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0
5. 인수에 관한 사항 ..... 11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2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12
4. 집합투자업자 ..... 1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4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5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22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27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3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3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38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42**
1. 재무정보 ..... 4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4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42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4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4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회사) ..... 45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6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6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6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47**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47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50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5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3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54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54
**[붙임] 용어 풀이 ..... 55**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00000] | | | | |
|---|---|---|---|---|---|
| 종류(클래스)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 | |
| 종류(클래스)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W)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C-I)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C-F)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Re)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 | |
| 종류(클래스)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판매)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1좌(1좌당 1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로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모집기간 | 2024년 05월 16일 ~ 2024년 05월 31일 |
|---|---|

| | |
|---|---|
|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점, 지점 및 온라인 |
|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1)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진챔피언공모주&YED타겟리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00000] | | | | |
|---|---|---|---|---|---|
| 종류(클래스)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6801 | E6802 | E6803 | E6804 | E6805 |
| 종류(클래스)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W)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C-I)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 (C-F)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R)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Re)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6806 | E6807 | E6808 | E6809 | E6810 |
| 종류(클래스)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6811 | E6812 |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변경사항 |
|---|---|
| 2024. . . | 최초설정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목표기준가격** |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80원을 말합니다.**<br>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br>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 |

| | |
|---|---|
| | 의 누적 기준가격<br>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S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마. Class S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W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바. Class C-W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I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사. Class C-I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아. Class C-F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R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자. Class C-R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R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차. Class C-R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카. Class C-P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 |
| **누적기준가격** | 이익분배금이 분배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
| **운용전환일** |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5영업일을 말합니다. |

## 4. 집합투자업자

| 회사명 | 유진자산운용㈜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9 앵커원 16층<br>대표전화 ☎ 02-2129-3300 /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하석근 | 1975 | 책임운용전문인력 | 2 | 266 | - | - | - | - | 경력년수 : 4.8년<br>-2002.07~2006.02 KB증권<br>-2006.03~2007.05 모건스탠리<br>-2007.06~2012.09 한국투자공사<br>-2012.10~2017.10 Dimensional Fund Advisors<br>-2018.06~2021.05 하나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br>-2021.06~2022.09 WWG자산운용<br>-2022.10~현재<br>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
| 홍현기 | 1994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3 | 352 | - | - | – | – | 경력년수 : 1.1년<br>-2021.12~현재<br>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단위형, 개방형, 종류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운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

| | | |
|---|---|---|
| | |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기관(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및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용 |
|---|---|---|
| ①집합투자증권 등 | 40% 이상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②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 50% 이하<br>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0%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 |
| ③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 50% 이상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④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⑤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
| ⑥파생상품 | 10% 이하<br>(위험평가액 기준) |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
| ⑦환매조건부매도 | 50% 이하<br>(증권총액 기준)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
| ⑧증권의 대여 | 50% 이하<br>(증권총액 기준)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
| ⑨증권의 차입 | 20% 이하 | - |
| ⑩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br>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br>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br>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주1)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주2)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 내용 | 예외 |
|---|---|---|
|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 | |
|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
|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④집합투자증권에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 |
|---|---|---|
| |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⑤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⑥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취득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 ⑦후순위채권에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①~⑤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
3.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⑥~⑨,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
|---|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제15조제1항제2호의 투자대상자산이 주식의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대상자산을 투자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익영업일까지 당해 투자대상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삼성전자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하로 투자하고, 주가 흐름에 따른 동적자산배분을 통해 주가 하락 시 매수 및 주가 상승 시 매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을 쌓는 구조로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공모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③ 목표기준가격 1,080원(A클래스 기준)에 도달한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채권관련 자산 및 현금성자산으로만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 | |
|---|---|
| **목표기준가격** |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80원을 말합니다.**<br>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br>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S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마. Class S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W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바. Class C-W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I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사. Class C-I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아. Class C-F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R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자. Class C-R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R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차. Class C-R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br>카. Class C-P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 |

| | |
|---|---|
| **누적기준가격** | 이익분배금이 분배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
| **운용전환일** |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5영업일을 말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일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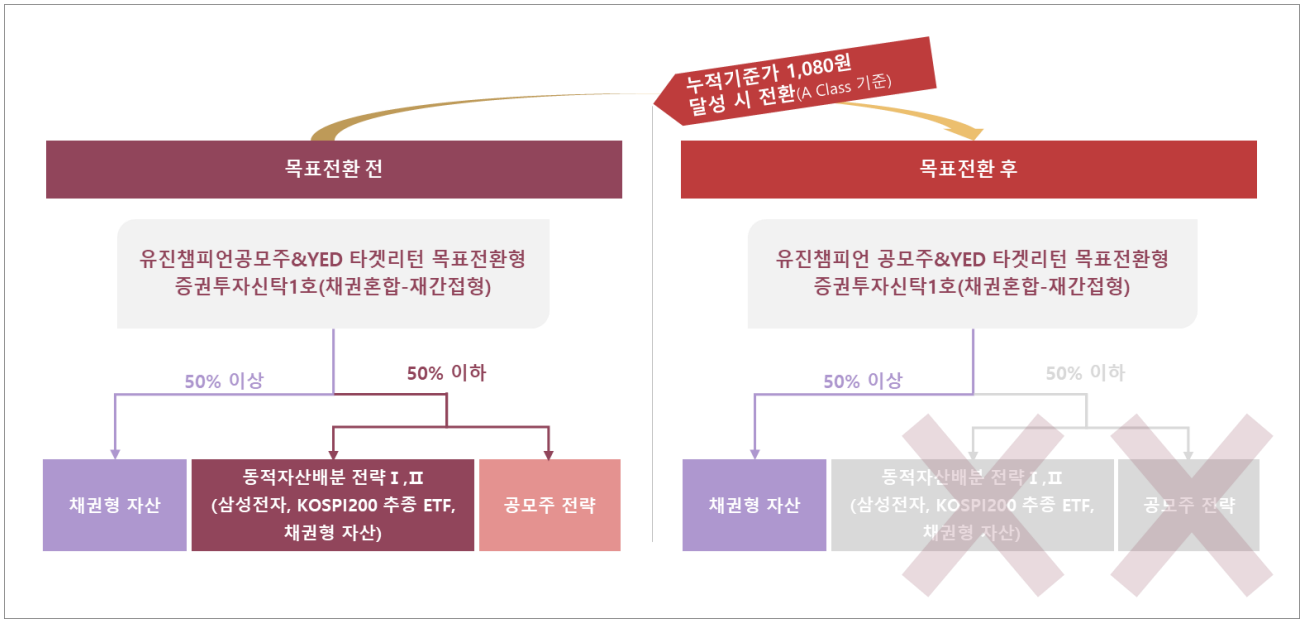


**■ 채권운용전략**

- 채권 및 채권 ETF (채권형 자산) ⇒ 50% 이상
- Carry 목적의 Buy and Hold 전략

**■ 동적자산배분전략**

- 주가 흐름에 따른 동적자산배분을 실시하여 목표수익률 달성 추구
- 유진자산운용의 자체 모델에 의한 1차적 투자 판단 및 예드자문사로부터 자문 참조하여 유진자산운용이 최종적으로 투자 비중 결정
- 편입자산 : 주식 및 주식 ETF (주식형 자산) + 채권 및 채권 ETF (채권형 자산) ⇒ 50% 이하
  ① 동적자산배분전략Ⅰ: 삼성전자 + 채권형자산
  ② 동적자산배분전략Ⅱ : KOSPI200 추종 ETF + 채권형자산
- 최초 주식형 자산 편입비 약 20%로 시작하여 주식형 자산 가격 하락 시 매수, 주식형 자산 가격 상승 시 매도하는 운용방법을 통해 매매이익을 축적
- 단, 삼성전자의 편입비는 증권시장(KOSPI)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 가능

**■ 공모주 투자를 통해 추가수익 추구**

- 공모주 시장 상황에 따라 IPO 참여 기준을 유기적으로 판단하되, 상장일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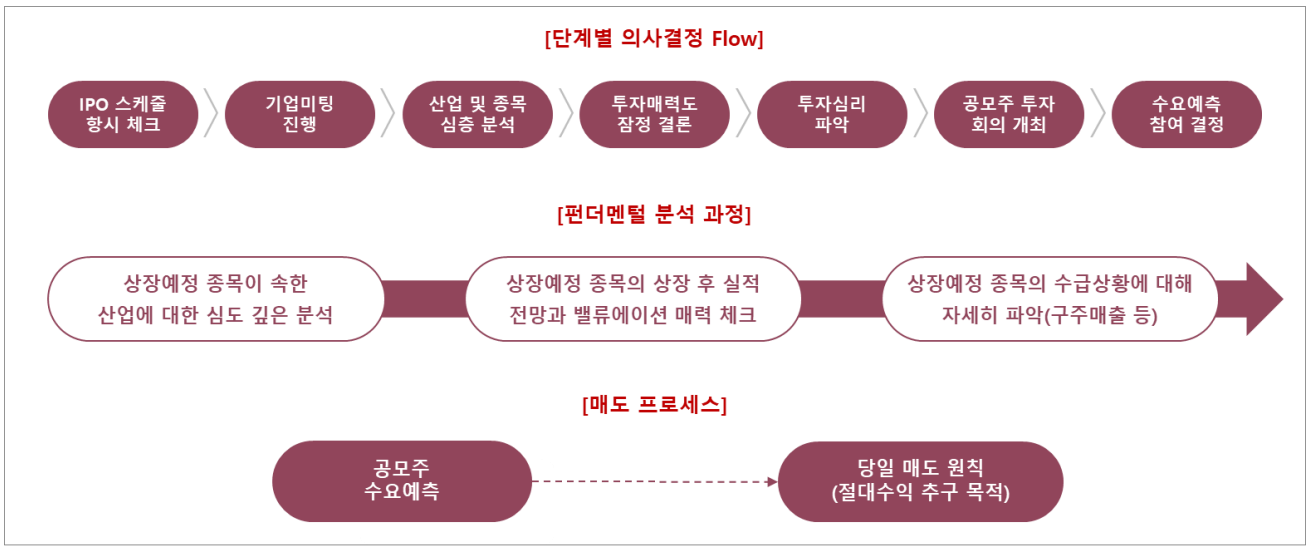


■ **운용전환일 이후 투자전략**

· 채권 및 채권 ETF +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

·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및 변동성 최소화를 목표로 운용할 계획임

▶ **투자대상 ETF 예시**

| 구분 | 편입비(안) | 펀드명칭 | 종류 | 순자산(억원) | 운용사 | 투자전략 |
|---|---|---|---|---|---|---|
| 주식관련 ETF | 7% | KODEX 200 | 국내 ETF | 73,821 | 삼성자산운용 | KOSPI 200 지수 추종 ETF |
| | 7% | TIGER 200 | 국내 ETF | 25,818 | 미래에셋자산운용 | KOSPI 200 지수 추종 ETF |
| 채권관련 ETF | 15% | TIGER KOFR 금리액티브 (합성) ETF | 국내 ETF | 47,428 | 미래에셋자산운용 | KOFR지수 추종 |
| | 10% | TIGER CD 금리투자 KIS(합성) ETF | 국내 ETF | 71,051 | 미래에셋자산운용 | KIS CDINDEX(총수익) 추종 |
| | 20% | Kodex 25-11 은행채 (AA-이상)PLUS 액티브 | 국내 ETF | 1,871 | 삼성자산운용 | KAP 25-11 은행채 PLUS 지수 (AA-이상, 총수익) 추종 |
| | 10% | KODEX 24-12 은행채 (AA+이상) 액티브 | 국내 ETF | 26,968 | 삼성자산운용 | KAP 24-12 은행채 총수익지수 추종 |

※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기준일 : 2024.03.18

※ 상기 투자대상 예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대상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의 편입비는 기준일 시점에서 예상되는 편입비율이며,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비율을 계속 조정하는 전략으로 운용되므로 상기의 투자한도는 운용전략,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특정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나, 우량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공모주에 투자하므로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나,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우량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목표기준가격 달성 후 운용전환 후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환매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시기, 내용, 경로를 통한 주기적인 운용보고서와 수시공시를 점검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다만,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운용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운용목적, 기본정보, 운용성과, 투자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운용보고서(Monthly factsheet)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다.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성과를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가 없는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지수나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및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변경 등록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기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
|---|---|
| 주의(Yellow) | 발생 Event에 대한 자본시장 영향 분석 → 운용전략의 조정 및 유동성관리 재검토 |
| 경계(Orange) | 위기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유동성 점검 등 발생 현안 논의, 관리방안 마련 및 자산매각순서 등 검토 |
| 위기(Red) | 위기전담조직 운영 강화 → 펀드별 유동성 확보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환매 연기방안 마련 |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마.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

| | |
|---|---|
| |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TF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 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총액)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내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조건부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의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 |

| | |
|---|---|
| | 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재간접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투자대상 자산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
| 추적오차 발생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와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
| 소수종목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계량모델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모델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의 수치를 사용하므로 계량모델에 따른 전략을 수행할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계량모델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시장 상황과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 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 공모주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 (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 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거래상대방 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문업자 계약 해지 및 변경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정지, 업무집행정지 및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접운용 또는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한 날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현수익률은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채권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만기위험 | 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
| 목표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 변경에 따른 위험 | 종류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않거나 혹은 전부환매가 될 경우에는 목표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전환 시 수익률은 종류 A 수익증권의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 기타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나,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환매대금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 또는 제한 위험 |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 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

| | |
|---|---|
| | 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 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정가액 산정위험 |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거래중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br>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운용프로세스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 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증권대차 거래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 4등급 (보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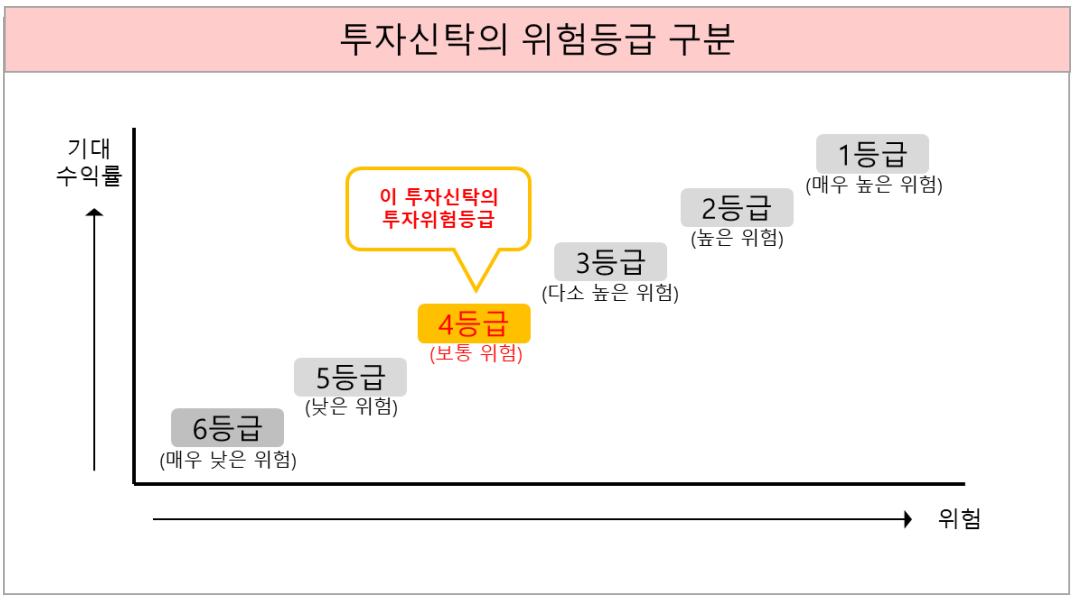


- 유진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은 단위형 투자신탁으로 최초설정일 이후 추가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br>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br>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br>다.「보험업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

| | |
|---|---|
| -기관(C-F)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br>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br>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br>-퇴직연금(C-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br>-퇴직연금(C-Re) |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br>-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br>-개인연금(C-Pe) |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주1)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나. 환매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 (오후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 (오후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환매금액 지급**

| | 1영업일(D) | 2영업일(D+1) | 3영업일(D+2) | 4영업일(D+3) | 5영업일(D+4) |
|---|---|---|---|---|---|
| 17시 이전 환매청구 | 환매청구일 |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 17기 경과 후 환매청구 | 환매청구일 | |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 허용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
| x | o | x |

**(7) 수익증권 환매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
| 공시주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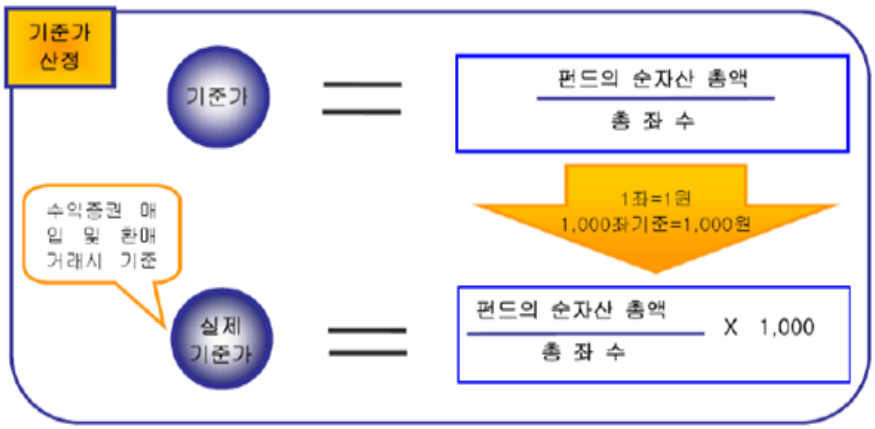


###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투자신탁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채무증권 |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무증권 |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및 기업어음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
| 장외파생상품 |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br>(클래스) | 수수료율 | | | |
|---|---|---|---|---|
| | 선취<br>판매수수료 | 후취<br>판매수수료 | 환매<br>수수료 | 전환<br>수수료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50%이내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25%이내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없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1)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일까지**

|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 (연간,%)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비용 | 증권거래비용 | 동종유형 총보수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0.465 | 0.20 | 0.02 | 0.015 | 0.70 | - | 0.70 | - | 0.71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0.465 | 0.10 | 0.02 | 0.015 | 0.60 | - | 0.60 | - | 0.4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465 | 0.60 | 0.02 | 0.015 | 1.10 | - | 1.10 | - | 1.0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465 | 0.30 | 0.02 | 0.015 | 0.80 | - | 0.80 | - | 0.59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0.465 | 0.09 | 0.02 | 0.015 | 0.59 | - | 0.59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0.465 | 0.00 | 0.02 | 0.015 | 0.50 | - | 0.50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0.465 | 0.04 | 0.02 | 0.015 | 0.54 | - | 0.54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0.465 | 0.02 | 0.02 | 0.015 | 0.52 | - | 0.52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0.465 | 0.35 | 0.02 | 0.015 | 0.85 | - | 0.85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0.465 | 0.18 | 0.02 | 0.015 | 0.68 | - | 0.68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465 | 0.40 | 0.02 | 0.015 | 0.90 | - | 0.90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465 | 0.21 | 0.02 | 0.015 | 0.71 | - | 0.71 | - | -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 |

**운용전환일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 (연간,%)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비용 | 증권거래비용 | 동종유형 총보수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0.20 | 0.20 | 0.02 | 0.015 | 0.435 | - | 0.435 | - | 0.71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0.20 | 0.10 | 0.02 | 0.015 | 0.335 | - | 0.335 | - | 0.4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20 | 0.60 | 0.02 | 0.015 | 0.835 | - | 0.835 | - | 1.0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20 | 0.30 | 0.02 | 0.015 | 0.535 | - | 0.535 | - | 0.59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0.20 | 0.09 | 0.02 | 0.015 | 0.325 | - | 0.325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0.20 | 0.00 | 0.02 | 0.015 | 0.235 | - | 0.235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0.20 | 0.04 | 0.02 | 0.015 | 0.275 | - | 0.275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0.20 | 0.02 | 0.02 | 0.015 | 0.255 | - | 0.255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0.20 | 0.35 | 0.02 | 0.015 | 0.585 | - | 0.585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0.20 | 0.18 | 0.02 | 0.015 | 0.415 | - | 0.415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20 | 0.40 | 0.02 | 0.015 | 0.635 | - | 0.635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20 | 0.21 | 0.02 | 0.015 | 0.445 | - | 0.445 | - | -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기타비용 | -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 |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금융비용 | -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6개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구분 |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
| | | 1년 | 1년 6개월 | 2년 | 2년 6개월 |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4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4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8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8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1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1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6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6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2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2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41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41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46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46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44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44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2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2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2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2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8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8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6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6 | | | | |

**1년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구분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1년 | 1년 6개월 | 2년 | 2년 6개월 | 3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2 | 149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22 | 149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7 | 108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7 | 108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4 | 167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4 | 167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3 | 117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3 | 117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1 | 82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1 | 82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2 | 67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2 | 67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6 | 74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6 | 74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4 | 70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4 | 70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8 | 125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8 | 125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1 | 97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1 | 97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3 | 134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93 | 134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4 | 102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4 | 102 | | | |

### 1년 6개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구분 |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
| | | 1년 | 1년 6개월 | 2년 | 2년 6개월 |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1 | 157 | 185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21 | 157 | 185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6 | 118 | 139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6 | 118 | 139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2 | 170 | 223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2 | 170 | 223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2 | 124 | 158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2 | 124 | 158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0 | 92 | 112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0 | 92 | 11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1 | 78 | 93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1 | 78 | 93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5 | 84 | 101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5 | 84 | 101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3 | 81 | 97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3 | 81 | 97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7 | 132 | 169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7 | 132 | 169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0 | 106 | 132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0 | 106 | 13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2 | 140 | 180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92 | 140 | 180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3 | 110 | 138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3 | 110 | 138 | | |

### 2년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구분 |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
| | | 1년 | 1년 6개월 | 2년 | 2년 6개월 |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0 | 156 | 193 | 220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20 | 156 | 193 | 220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6 | 117 | 149 | 169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6 | 117 | 149 | 169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2 | 169 | 227 | 279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2 | 169 | 227 | 279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1 | 123 | 165 | 199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1 | 123 | 165 | 199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0 | 91 | 122 | 143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0 | 91 | 122 | 14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1 | 77 | 104 | 118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1 | 77 | 104 | 118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5 | 83 | 112 | 129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5 | 83 | 112 | 129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3 | 80 | 108 | 124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3 | 80 | 108 | 12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6 | 131 | 176 | 212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6 | 131 | 176 | 212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9 | 105 | 141 | 167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9 | 105 | 141 | 167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1 | 138 | 186 | 225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91 | 138 | 186 | 225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2 | 109 | 147 | 175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2 | 109 | 147 | 175 | |

### 2년 6개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구분 |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
| | | 1년 | 1년 6개월 | 2년 | 2년 6개월 |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0 | 156 | 192 | 229 | 256 |

| | | | | | | |
|---|---|---|---|---|---|---|
| (A)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20 | 156 | 192 | 229 | 256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5 | 116 | 148 | 179 | 20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5 | 116 | 148 | 179 | 20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1 | 168 | 225 | 282 | 334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1 | 168 | 225 | 282 | 33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1 | 122 | 164 | 206 | 239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1 | 122 | 164 | 206 | 239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0 | 90 | 121 | 152 | 17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0 | 90 | 121 | 152 | 17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1 | 77 | 103 | 129 | 144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1 | 77 | 103 | 129 | 14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5 | 83 | 111 | 140 | 15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5 | 83 | 111 | 140 | 15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3 | 80 | 107 | 134 | 15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3 | 80 | 107 | 134 | 15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6 | 130 | 174 | 219 | 25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6 | 130 | 174 | 219 | 25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9 | 104 | 140 | 176 | 20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9 | 104 | 140 | 176 | 20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1 | 137 | 184 | 232 | 27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91 | 137 | 184 | 232 | 27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2 | 109 | 146 | 183 | 21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2 | 109 | 146 | 183 | 211 |

### 만기(3년)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 구분 | | 투자기간 (단위:천원) | | | | |
|---|---|---|---|---|---|---|
| | | 1년 | 1년 6개월 | 2년 | 2년 6개월 | 3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20 | 155 | 190 | 226 | 26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20 | 155 | 190 | 226 | 262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5 | 115 | 146 | 177 | 20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5 | 115 | 146 | 177 | 20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11 | 166 | 222 | 278 | 33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111 | 166 | 222 | 278 | 33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1 | 121 | 162 | 203 | 244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1 | 121 | 162 | 203 | 244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9 | 89 | 120 | 150 | 18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9 | 89 | 120 | 150 | 18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0 | 76 | 102 | 127 | 15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0 | 76 | 102 | 127 | 15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4 | 82 | 110 | 138 | 166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4 | 82 | 110 | 138 | 16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2 | 79 | 106 | 132 | 16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52 | 79 | 106 | 132 | 16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6 | 129 | 172 | 216 | 260 |

| | | | | | | |
|---|---|---|---|---|---|---|
| 인-퇴직연금(C-R)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86 | 129 | 172 | 216 | 26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8 | 103 | 138 | 173 | 20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68 | 103 | 138 | 173 | 20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91 | 136 | 182 | 228 | 27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91 | 136 | 182 | 228 | 27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1 | 108 | 144 | 180 | 21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보수・비용 | 71 | 108 | 144 | 180 | 217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투자수익률은 아래 각각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가정하여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운용전환일까지 투자수익률 : 8.0%

② 운용전환일 이후 투자수익률 : 2.0%

③ 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 6.0%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에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납입금액]<br>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br>①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br>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br>[세액공제]<br>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br>※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
| 분리과세 한도 |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다만 1,5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세액공제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br>-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

| | |
|---|---|
| |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br>※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 과세체계 다양성 |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재무정보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나. 재무상태표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다. 손익계산서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신규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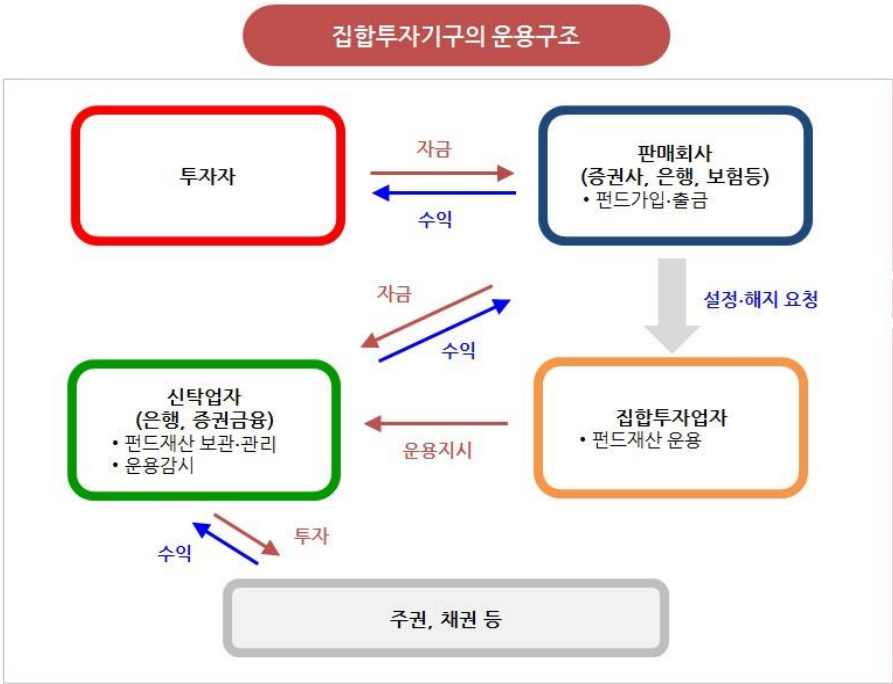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유진자산운용㈜ |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9 앵커원 16층 |
| 연락처 | ☎ (02) 2129-3300 |
| 인터넷 홈페이지 | fund.eugenefn.com |
| 회사연혁 | 1989.09 우성투자자문 설립<br>1991.05 한일은행 그룹에서 인수, '한일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br>1996.09 '한림투자신탁운용'으로 업종 전환 (대림그룹과 합작)<br>1998.05 '한일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br>1999.06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로스가 경영권을 가진 서울증권 인수<br>2006.04 '서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br>2006.12 유진그룹에서 서울증권 인수,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br>2008.01 '유진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
| 자본금 | 225억원 |
| 주요주주현황 | 유진투자증권 100% |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등

**(2) 의무와 책임**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FY2023<br>2023.12.31 | FY2022<br>2022.12.31 |
|---|---|---|---|
| 요약<br>재무상태표 | 자산총계 | 53,701 | 50,066 |
| | Ⅰ. 현금 및 예치금 | 14,254 | 14,689 |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868 | 17,077 |
| | Ⅲ.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 | 69 |
| | Ⅳ.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8 | 45 |
| | Ⅴ. 종속기업투자자산 | 3,113 | 2,712 |
| | Ⅵ. 유형자산 | 4,553 | 3,919 |
| | Ⅶ. 기타자산 | 10,837 | 11,554 |
| | 부채총계 | 22,543 | 21,305 |
| | Ⅰ. 차입부채 | 3,000 | 3,000 |
| | Ⅱ. 기타부채 | 19,543 | 18,305 |
| | 자본총계 | 31,158 | 30,622 |
| | Ⅰ. 자본금 | 22,500 | 22,500 |
| | Ⅱ. 자본잉여금 | 2,486 | 2,486 |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9) | (104) |
| | Ⅳ. 이익잉여금 | 6,291 | 3,878 |
| 요약<br>손익계산서 | Ⅰ. 영업수익 | 21,887 | 17,678 |
| | Ⅱ. 영업비용 | 18,980 | 19,938 |
| | Ⅲ. 영업이익 | 2,906 | -2,260 |
| | Ⅳ. 영업외수익 | 361 | 0 |
| | Ⅴ. 영업외비용 | 3 | 3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64 | -2,263 |
| | Ⅶ. 법인세비용 | 851 | -388 |
| | Ⅹ. 당기순이익 | 2,413 | -1,874 |

### 라. 운용자산규모

[2024.03.26 현재 / 단위 : 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 | 부동산 | 특별<br>자산 | 혼합<br>자산 | 단기<br>금융 | 총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기타 | | | | | |
| 수탁고 | 2,459 | 27,169 | 834 | 0 | 1,844 | 1,849 | 0 | 9,506 | 8,366 | 990 | 27,754 | 80,770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업무위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탁업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
|---|---|
| 업무위탁의 범위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 등 |
| 회사명 | (주)예드 |
| 설립 | 2022년 01월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7 |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회사)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중소기업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br>☎ 1588-2588 / www.ibk.co.kr |
| 연혁 | 1961.08. 중소기업은행 설립 |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펀드파트너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br>☎ (02)2180-0400 / www.shinhanfundpartners.com |
| 회사연혁 등 | 2000.06 설립<br>2000.09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

###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

**(2)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KIS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br>☎ 02-2251-1400<br>www.koreabp.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br>☎ 02-398-3900<br>www.nicepni.com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br>☎ 02-721-5300<br>www.fnpricing.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br>☎ 02-3215-1400<br>www.bond.co.kr |
| 회사 연혁 | 2000.05 설립<br>2000.07 금융감독원 등록 | 2000.06 설립<br>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 2011.06 설립<br>2011.09 금융감독원 등록 | 2000.06 설립<br>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

###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지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아래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19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등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투자신탁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투자신탁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성과보수율 산정내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
|---|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br>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br>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br>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br>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br>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br>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br>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br>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 .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br>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br>3)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br>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br>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br>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br>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br>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 |

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가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①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구분 | 평가항목 | |
|---|---|---|
| 운용부서 | 정량평가 | 세미나/ 탐방 / NDR 등 |
| | 정성평가 |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 역량 |

| | | |
|---|---|---|
| | | IR미팅, NDR 일정 확보 |
| | | NDR 일정 확보 능력 |
| | | 기업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 |
| | | 기타 사항 |
| 트레이딩부서 |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 |
| |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 |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구분 | 평가항목 |
|---|---|
| 운용부서 | 시장 및 기관 동향 |
| | 발행 및 수요예측의 유효성 |
| | 세미나지원 및 리서치 |
| | 거래보안유지 |
| 트레이딩부서 |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
| |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 투자주체 |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
| 투자목적 |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
| 투자집행시기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
| 투자금액 | 2억원 |
| 투자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 투자금 회수계획 |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보유 예정 |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따라 해지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주3) 투자기간 경과 전에도 위의 '주1)'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금 환매 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 상 환매 결과를 기재할 예정이며,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 풀이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br>(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br>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br>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br>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의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신탁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 |
|---|---|
|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 환헤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